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314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길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

변론 종결2023. 2. 15.

판결 선고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9. 체결한 증여계약을 1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0차2434호로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여금 1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2. 'C은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확정된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따른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또 다시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0차전6286호로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여금 1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0. 'C은 원고에게 12,552,240원 및 그 중 12,4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2021. 1. 25.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21.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모친으로서 2016. 5. 22. 사망한 망 D의 소유였고, 망 D의 공동상속인들로는 망 D의 배우자인 E 및 망 D의 자녀들인 F, G, C이 있었는데, C은 망 D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C은 2021. 7. 9.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392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망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조합과 사이에, 2006. 12.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H조합에게 채무자 망 D1), 채권최고액 161,2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9. 6.에도 또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H조합에게 채무자 망 D, 채권최고액 48,8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그 후 피고는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 유한회사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에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7. 13.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이때 담보권에 의해 우선변제 받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관하여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의 목적물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440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H조합로 하여, 채권최고액 161,200,000원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48,800,000원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40,000,000원으로서, 이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시가는 53,333,333원($= 240,000,000\text{원} \times 2/9$, 원 미만 버림)이었던 사실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근접한 2021. 7. 12.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망 D의 H조합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액수는 141,559,27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망 D의 사망 이후 C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속하였으나, 앞서 본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근저당부동산과 함께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근저당부동산은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나, 이 경우 근저당권 자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때까지 근저당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H조합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바, 이에 따라 C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자신들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상속받은 채무를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결국 처분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시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3,333,333원이었으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를 초과하는 141,559,27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하석찬

별지

- 1) 당초 채무자는 C이었으나, 2013. 9. 6.자 계약인수에 따라 채무자가 망 D로 변경되었다.
- 2)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이 사건 지분의

재산가액이 53,333,333원인 것에 대하여 위 재산가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4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